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할 항공기가 해외에 있거나 기업결합 등으로 즉시 등록증명서 발급 및 항공기 탑재가 필요한 경우 관인 인영된 등록증명서를 현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항공기 등록 업무의 실효성과 운항의 안정성을 높이고,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시 외국의 영공통과 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기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 발급 필요 여부(신규 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등록신청 확인 증명서의 발급) 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외국의 영공통과 허가 등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 ② 등록증명서는 관인 날인(捺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현지에서 신속히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 항공기에 탑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영(印影) 처리한 관인을 사용한 등록증명서를 전자 형태로 인쇄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한 이후 다음 비행 전까지

날인(捺印) 처리한 등록증명서로 교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기 등록의 경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항공기	종류 · 형식			등록기호	
				HL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 국적				
경정사항구분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항공기의 표시 [] 기타			
경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 연월일		(년 월 일)			

「항공기등록령」 제17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19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사항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등록에 관한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1부 3.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기안·결재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등록원부 기재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등록증명서 수령 (해당되는 경우) 결과 통지 신청인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소				
항공기	종류·형식	등록기호		※	
	제작자	제작번호			
	정치장	제작연월일			
소유자	성명·명칭				
	주소·국적				
임대인	성명·명칭				
	주소·국적				
임차인	성명·명칭				
	주소·국적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항공기등록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 []발급 필요 []발급 불필요

「항공안전법」 제7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신규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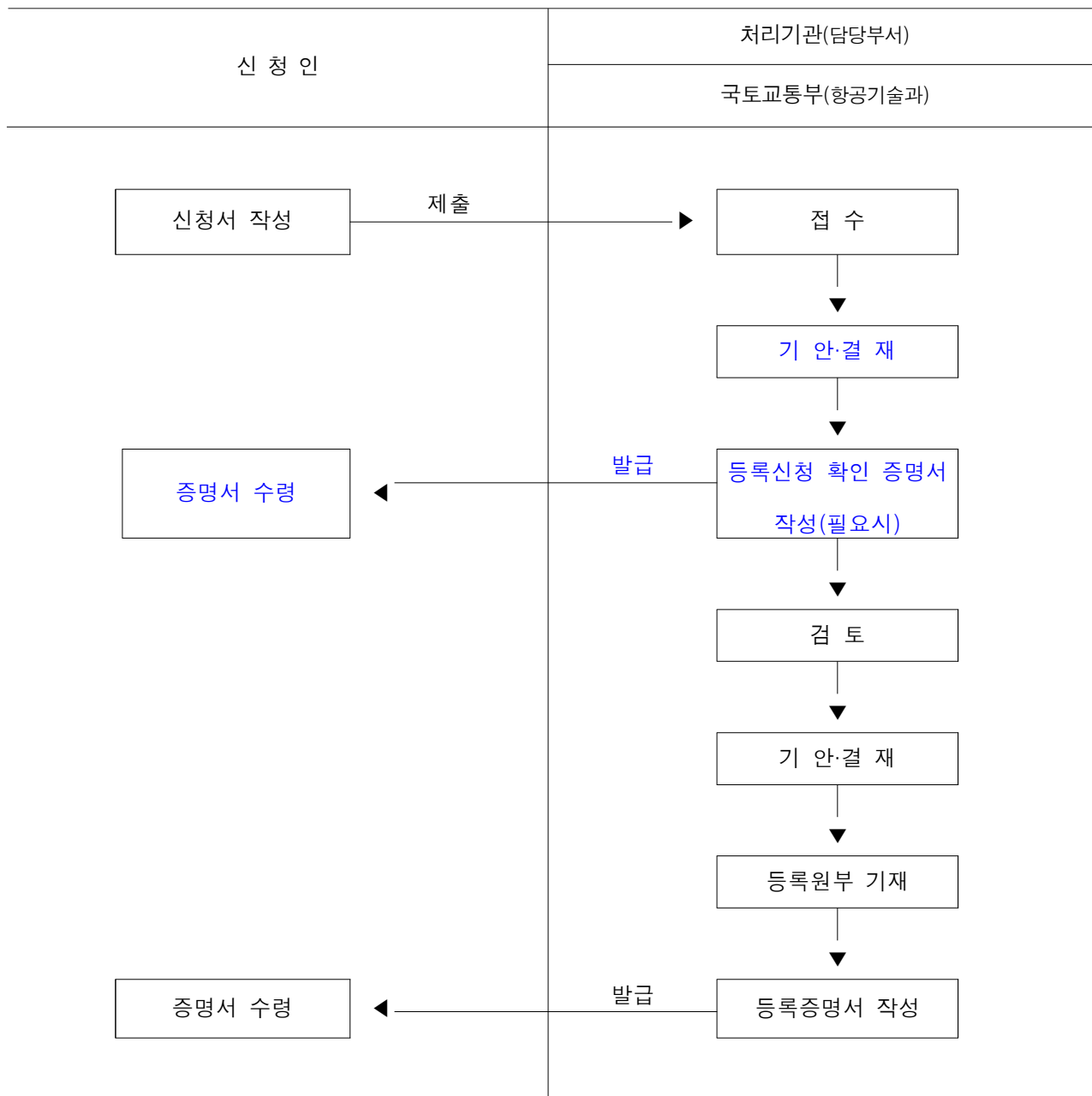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의2.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7. 삭제 <2023. 5. 24.> 8.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8의2. 수출국에서 해당 항공기가 말소등록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별지 제12호서식) 1부 10. 항공기 좌·우 측면 사진 각2매(15×1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 및 25×2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를 말하며, 전자파일을 포함합니다). 다만,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등록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증명서번호 Registration No.
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		
1. 국적 및 등록기호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	2.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형식 Manufacturer and manufacturer's designation of aircraft	3. 항공기 제작일련번호 Aircraft serial no.
4. 항공기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owner 항공기 임차인의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lessee		
5.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 Address of owner 항공기 임차인의 주소 Address of lessee		
6. 위 항공기는 「국제민간항공조약」(1944년 12월 7일) 및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민간항공기 등록원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described aircraft has been duly entered on the civil aircraft register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dated 7 December 1944 and with the Civil Aviation Safe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발행 연월일 Date of Issue . .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직인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

Confirmatio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pplication

1. 등록신청 연월일(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2. 항공기 형식(Aircraft type):

3. 항공기 제작 일련번호(Aircraft serial no.):

4. 국적 및 등록기호(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

5. 등록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Name of applicant) :

6. 등록 신청인의 주소(Address of applicant):

7. 위 항공기는 대한민국 항공기등록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It is hereby confirmed that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for the above aircraft has been received pursuant to Article 17-2 of the Republic of Korea Aircraft Registration Regulation.

발행 연월일

Date of Issue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직인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령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14조(신청서의 기재사항) ----- ----- ----- -----. 1. 2. (현행과 같음) 3. <u>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 발급 필요 여부 (신규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u> 4. (현행 제3호와 같음)
3. (생략) <u><신설></u>	<u>제17조의2(등록신청 확인 증명서의 발급) 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외국의 영공통과 허가 등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
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 (생략) <u><신설></u>	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u>등록증명서는 관인 날인(捺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현지에서 신속히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 항공기에 탑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영(印影) 처리한 관인을 사용한 등록증명서를 전자 형태로 인쇄하</u>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재 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여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한 이후 다음 비행 전까지 날인(捺印) 처리한 등록증명서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 -----.
---	--